

# 2018년도 북일면 종합감사 결과

##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9. 4.(화) ~ 9. 7.(금) / 4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4명(감사 3, 인력지원 2)
- 감사범위 : 2015. 10. 17. ~ 2018. 9월 감사일 현재

## 2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2	6	16	14/831	8/805	6/26	-	
원 처 분	12	3	9	8/669	4/649	4/20	-	혼계1 주의2
현지처분	10	3	7	6/162	4/156	2/6	-	

※ (회수) 공사비 과다집행, 공가 부당사용, 직불금 부당 지급  
(추징)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및 민원서류 수수료 미징수

<< 2015년도 감사결과 >>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3	8	15	4/22	2/212	2/110		
원 처 분	15	4	11	2/212	2/212			혼계 2 주의 2
현지처분	8	4	4	2/110		2/110		

※ (회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사 산재·고용보험료 정산  
(추징) 공사계약 인지세, 주민등록증 발급급 과태료

**3****지적사항****원 처 분****1. 공사 계약업무 및 설계·공사감독 업무추진 부적정(주의)**

○ 계약시 설계서 미작성·미첨부 : 8건(2016 ◆♣면 포장보수공사 등)

**2. 사업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 등 소홀(주의)**

○ 대상사업 : 2016 ▣◎진입로 포장공사 등 9건

⇒ 물품검수자·준공검사자·공사감독 미임명(5건), 비 전문직 공무원 준공검사 실시(4건), 준공검사(감독)조서 누락(4건)

**3. 공사 설계변경 소홀(시정)**

○ 2017 ▣●리 △□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외 4건 : 649천원

**4. 면 청사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시정)**

○ 불법건축 2동 104.62㎡

○ 무단 용도변경 1동 77.9㎡(창고 ⇒ 주민센터)

**5. 공용차량 관리 소홀(주의)**

○ 차량유류수불 지연 입력 36회, 주유량 과다 입력 30회

○ 차량정비내역 미입력 6회

**6.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1건 9,580,500원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계	11건	9,580,500	
2016.02.04	지역 특산물 홍보용 ** 구입	270,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7.01.25	지역 특산물 홍보용 ** 구입	198,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8.02.08	지역 특산물 홍보용 ** 구입	234,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6.02.04	*명절 업무추진 협조 유관기관장 격려	160,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6.09.08	**명절 업무추진 협조 유관기관장 격려	264,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2017.01.25	*명절 업무추진 협조 유관기관장 격려	110,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7.09.25	**명절 업무추진 협조 유관기관장 격려	110,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8.02.08	*명절 업무추진 협조 유관기관장 격려	130,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6.1월~12월	직원 노고격려	1,847,000	예산과목 부적정
2017.1월~12월	직원 노고격려	3,940,000	예산과목 부적정
2018.1월~8월	직원 노고격려	2,317,500	예산과목부적정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3건 857,000원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계	3건	857,000	
2015.12.22	연말연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구입	260,000	정원가산업무 추진과 무관
2016.12.27	연말연시 직원 사기진작 ** 구입	320,000	정원가산업무 추진과 무관
2017.12.21	연말연시 직원 사기진작 ** 구입	277,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 7.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주의)

-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 과소 및 과다 지급
  - 2016년 : 4건 과소 12매, 과다 18매
  - 2017년 : 7건 과소 45매, 과다 6매
  - 2018년 : 2건 과소 9매, 과다 6매

## 8.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주의)

- 2015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13명에 대해 매월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나 지연 지급

연도별	지원인원	지원횟수	지연지원 횟수	비 고
합 계		34	15	
2015	13	2	1	
2016	11	12	10	
2017	13	12	4	
2018	11	8	0	

## 9.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미흡(주의)

- 매 분기별 대상자 선정 확인사항에 대한 절차없이 학자금 지급 (거주지, 농업인 해당여부, 영농규모, 타 장학금 중복여부 등)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및 확인현황

연도별	지급대상	지급액 (천원)	확인여부					비고
			신청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5	7명	6,273	-	-	-	-	부	
2016	5명	4,493	부	부	부	부	여	
2017	2명	1,754	여	여	여	여	여	
2018	2명	931	여	여	여	-	-	

## 10. 농지원부 등재신청 및 경작사실 확인 소홀(주의)

- 농지원부 등재신청 및 타시군 경작사실 확인 의뢰시 현지 출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농지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확인절차 없이 등재 및 통보 : 555건

구분	의뢰(신청)건수	확인결과보고(출장)	등재 및 통보	비고
계	555		555	
농지원부 등재	195	-	195	
경작사실 확인	360	-	360	

## 11. 민원서류 공문서 등록 소홀(주의)

- 2015년 10월부터 2018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 민원에 대해 온나라 문서 미등록 : 202건
- 연도별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문서 미등록 현황 (단위 : 건)

구분	처리건수	문서 미등록	비고
계	335	202	
2015년	33	22	
2016년	103	78	
2017년	118	75	
2018년	81	27	

## 12.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시정·주의)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시정)

-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1건당 5천원을 징수하여야 하나 4건에 대해 수수료 과소 부과 및 미부과 : 19,600원 추징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발급사유	수수료	부과수수료	부적정 내용
1	'16.05.23	이○○	분 실	5,000	400	4,600원 미부과
2	'18.04.11	황○○	분 실	5,000	-	5,000원 미부과
3	'18.04.12	박○○	분 실	5,000	-	5,000원 미부과
4	'18.04.24	김○○	분 실	5,000	-	5,000원 미부과

###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적정(주의)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받지 않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전입세대 열람 : 50건

연도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50	5	33	12	

## 현 지 처 분

### 1. 수익계약 업무 소홀(주의)

- 대상사업 : 2016 ㉠㉡마을 수로관 보수공사 등 65건
  - 결의서(계약서) 내용 기재누락 : 2건
  - 결의서(계약서) 서식 상이 : 65건
  - 계약 및 회계 등 첨부서류에 날짜 등 기재사항 누락 및 청구서 미등록 : 64건
  - 청구서 누락 : 2건

### 2. 공가 사용 부적정(시정, 회수)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미통보 대상자가 공가 사용
  - 지방㉢㉣서기 ㉤㉥, 49천원 회수

### 3.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소홀(주의)

- 유연근무자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 미등록
  - 출·퇴근 미등록 99일, 출근 미등록 2일, 퇴근미등록 18일

유연근무자	일자	부당사항
계	9명	
류○○	2017.08.01.~2017.12.31.	출·퇴근 미등록 20일
신○○	2017.08.01.~2017.12.31.	출·퇴근 미등록 32일 출근미등록 1일 퇴근미등록 2일
김○○	2017.08.01.~2017.09.29	출·퇴근 미등록 3일
변○○	2017.08.01.~2017.08.31	출·퇴근 미등록 6일
이○○	2017.08.01.~2017.09.29	출·퇴근미등록 14일
조○○	2017.08.07.~2017.08.31	출·퇴근미등록 3일
박○○	2017.08.01.~2017.12.31	출·퇴근 미등록 2일 출근미등록 1일 퇴근미등록 3일
백○○	2017.08.01.~2017.08.31	퇴근미등록 1일
	2017.11.22.~2017.11.29	퇴근미등록 2일
	2017.12.06.~2017.12.27	퇴근미등록 4일
	2017.01.10.~2018.01.31	퇴근미등록 3일
	2018.02.06.~2018.02.28	출·퇴근미등록 1일 퇴근미등록 3일
박○○	2017.08.07.~2017.12.29	출·퇴근미등록 18일

#### 4.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소홀(주의)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지연 수납 : 19건

구분	연도별	수납건수	지연건수	지연일수
계		157	19	
쓰레기 봉투	소계	49	5	
	2016	5	1	4일
	2017	41	4	1~8일
대형 폐기물스티커	소계	108	14	
	2016	41	1	1일
	2017	38	11	1일~8일
	2018	29	2	1일~14일

## 5. 장애인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업무 추진 소홀(주의)

○ 장애인 사망자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현황

연도별	장애인 사망자 수	반환통보여부	회수 및 폐기	비고
계	8		0	
2016	3	부	0	
2017	3	부	0	
2018	2	부	0	

## 6. 농지원부 등재신청 및 경작사실 확인 소홀(주의)

○ 농지원부 등재신청 및 타시군 경작사실 확인 의뢰시 현지 출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농지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확인절차 없이 등재 및 통보 : 555건

구 분	의뢰(신청)건수	확인결과보고(출장)	등재 및 통보	비고
계	555		555	
농지원부 등재	195	-	195	
경작사실 확인	360	-	360	

## 7. 쌀소득 및 밭 직불금 부당 지급(시정)

○ 농지법 제34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행점검 없이 전용농지에 직불금 부당 지급 : 3건 106,880원

신청인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필지면적 (㎡)	전용면적 (㎡)	전용목적	직불금 수령				환수액
								종류	연도	면적	금액	
계	2명				1,877	1,091				1,091	106,880	106,880
차○○	◎●로 896-3	◇■리	9-13	답	1,446	660	농업인주택	쌀 직불	2016	660	71,040	71,040
권○○	서울시 ●동	▲▣리	122-1	전	431	431	농업인주택	밭 직불	2016	431	17,240	17,240
								밭 직불	2017	431	18,600	18,600

## 8. 민방위 업무추진 소홀(주의)

-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이장 사실확인 누락하고 민방위대 편성
-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미알림

(단위 : 명)

연 도	대수	대원명부	신규편성	제외	비고
2017년	6	145	1	86	

## 9. 전출 인감이송기간 미준수(주의)

-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
- 전출 인감이송기간 미준수 현황

연 도 별	이 송 현 황						비고
	계		3일 이내		3일 초과		
	건	매	건	매	건	매	
계	286	323	245	276	41	47	
2015년	24	25	20	21	4	4	
2016년	103	119	71	82	32	37	
2017년	88	104	85	100	3	4	
2018년	71	75	69	73	2	2	

## 10.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민원처리 소홀(주의)

-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미통지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민원명	처리기간	처리일시	비고
1	'17.03.06	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17.03.07	'17.03.06	
2	'17.08.28	박○○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17.08.29	'17.08.29	
3	'17.08.28	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17.08.29	'17.08.29	

## 목 차

### ◀계약·건설공사 분야▶

- ① 공사 계약업무 및 설계·공사 감독업무 추진 부적정(주의) ..... 12
- ② 준공검사 업무 등의 소홀(주의) ..... 15
- ③ 공사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시정) ..... 18
- ④ ◇◎사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시정) ..... 20

### ◀세출·총무 분야▶

- ⑤ 공용차량 관리 소홀(주의) ..... 22
- ⑥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24

###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 ⑦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주의) ..... 27
- ⑧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주의) ..... 29

### ◀농·축산, 산림 분야▶

- ⑨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주의) ..... 31
- ⑩ 농지원부 등재신청 및 경작사실 확인 소홀(주의) ..... 33

### ◀민원, 기록물 분야▶

- ⑪ 민원서류 공문서 등록 소홀(주의) ..... 35
- ⑫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시정·주의) ..... 37

# 처 분 지 시 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주 의			

## **제목 : 공사 계약업무 및 설계 · 공사감독업무 추진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북일면에서는 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2016 ◎◇면 포장보수공사』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각각 계약·착공·준공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동 법률 제17조(검사)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건설감독자의 감독업무 제2항 관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규정에 따라 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관련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계약예규)공사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는,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

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조(계약문서) 제1항에는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 「(계약예규)공사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각 상황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동 (계약예규)공사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2항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 등 복합공종을 추진하려는 공사에는 설계서가 필수적 요소임과 함께 계약 시 설계서를 생략하여도 되는 경우를 명시한 근거는 없다.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표 1】의 현황과 같이『2015 ◎◇면 포장보수공사』 등 8건의 계약·공사를 추진하면서 사무분장상 설계 및 감독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담당 공무원이 “시급하고 업무량이 폭주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설계서를 작성 또는 첨부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받은 임의대로 적은 단가 등이 적용된 견적서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 및 준공하였다.
- 이에 따라 품셈 및 각종 시방기준의 적용된 시방서와 설계내역의 세부사항이 없어 시공기준 및 수량, 단가와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을 알 수 없고, 공종별 시공 시에 현장여건 등의 상이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견되었더라도 당초 설계도서의 미 작성으로 말미암아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변경절차이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그리고 공사추진 과정에 있어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의 확인과 같은 사실상 감독 및 준공검사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도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또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の内容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라는 내용의 공사 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대가를 지급하는 등 계약업무와 설계·감독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표 1】 현 황**

사업명	도급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일자	준공일자	비고
계	8건				
2016 ◎◇면 포장보수공사	(주)**건설	2,950	2016.3.11	2016.3.21	
2016 ◎◇면 ▣●마을 수로관공사	**토건(주)	1,950	2016.3.28	2016.5.16	
2016 ●♣리 농로보수공사	**토건(주)	1,764	2016.12.19	2017.3.27	
2016 ★◎마을 수로관공사	(주)**토건	2,700	2016.5.3	2016.5.17	
2016 ▣▶진입로 포장공사	(주)**건설	2,000	2016.6.21	2016.6.24	
2016 ♣Σ마을 배수로공사	(주)**건설	3,200	2016.6.27	2016.6.29	
2016 상수도누수보수공사	**기업	4,850	2016.4.12	2016.5.30	
2016 ▣●마을 농로보수공사	(주)**토건	1,470	2016.8.9	2016.9.1	

**[ 처분지시 ]**

- ① 공사 계약시 설계서를 첨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 처리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주 의			훈계,주의

## **제목 : 준공검사 업무 등의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북일면에서는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진입로 포장 공사」 등 9건의 사업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각각 계약 · 착공 · 준공 (검수)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검사)의 규정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장성군 재무회계규칙」 제91조(검사서) 제1항에는 “검사원 제 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날인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장성군재무회계규칙」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회) 및 「장성군물품관리조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9조 (물품검사서)에 의하면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물품납품 완료시 계약담당자는 재무관의 승인을 득하여 물품 검수자를 지정하여 사업의 적정이행여부 및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토록 했어야만 하였다.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표 1】 현황과 같이 「2016 ■▶진입로 포장공사」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 준공검사 · 물품검사(수) 공무원 지정하지 않았거나, 「2016 ♣Σ마을 배수로공사」 등 4건은 비전문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준공하였다. 또한 「2018즉시민원해결사업 1차(임차)」 등 4건의 사업은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91조 의 별표 91호서식의 준공검사(감독)조서를 누락한 채 준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공사 · 물품계약 · 준공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관련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부적정내용
1	2016 ■▶진입로 포장공사	2016.6.21	2016.6.23 ~2016.6.24	2,000	(주)** 건설	공사감독 · 준공검사자 미 임명, 비 전문직 준공검사실시
2	2016 ♣Σ마을 배수로공사	2016.6.27	2016.6.27. ~2016.6.29	3,200	(주)** 건설	공사감독 · 준공검사자 미 임명, 비 전문직 준공검사실시

3	2016 ●♣마을 농로보수공사	2016.8.9	2016.8.10. ~2016.9.1	1,470	(주)** 토건	공사감독· 준공검사자 미 임명, 비 전문직 준공검사실시
4	2016 ☒●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2016.11.2 1	2016.11.22 ~ 2016.12.9	3,000	(주)** 산업	공사감독· 준공검사자 미 임명, 비 전문직 준공검사실시
5	2017 ◆●1리 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구입 (벤치플룸관)	2017.12.8	2017.12.8 ~2017.12.1 1	2,839	**콘크리 트(주)	물품검수자 미 임명
6	2018즉시민원해결사업 1차(임차)	2018.2.19	2018.2.19. ~ 2018.5.28	3,000	**중기	공사감독· 준공검사조서 누락
7	2018 **기성제정비사업	2018.5.28	2018.5.28. ~ 2018.5.28	2,100	심**	공사감독· 준공검사조서 누락
8	2018 **기성제정비사업 장비임차	2018.5.28	2018.5.28. ~ 2018.6.5	1,500	**중기	공사감독· 준공검사조서 누락
9	2018 도로변 **기사업 (1차)	2018.6.22	2018.6.22. ~ 2018.6.29	6,327	이**	공사감독· 준공검사조서 누락

## [ 처분지시 ]

- ① 계약업무담당자는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자를 임명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바라며, 전문직렬이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시기 바랍  
니다.
- ② 또한,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문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시 정	회 수	649,000	

## **제목 : 공사추진에 따른 설계변경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거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계약대상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건설감독자의 감독업무 제2항 관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규정에 의거 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관련서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지방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이행중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표 1】 현황과 같이 「2017 ■▶리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콘크리트포장의 품질향상을 위해 27㎡의 바닥용 비닐을 포장 콘크리트 전에 포설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현장여건을 이유로 시공하지 않았다. 또한 「2017 ♠◁마을 안길보수공사」에 5.0㎡, 「2017 ◎▨리 ▣▤배수로정비공사」에서는 0.8㎡의 거푸집을 현장여건 상 시공하지 않았으며, 「2017 ◇▽내 화단정비사업」의

설계에 반영된 경계 방부목 13.2m를 시공하지 않고도 이에 대한 설계 변경 등 감액 없이 공사비를 지급하여 이로 인해 제 경비 포함 649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관련사업 현황

공사명	도급액 (천원)	공사기간	미시공량		시공사	비고
			수량	회수액		
계	4건			649천원		
2017 ◎☒리 ■▣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646	2017.11.17.~ 2018.1.18	거푸집 0.8㎡	31천원	**건설(합)	거푸집
2017 ◎◇리 농로확포장공사	2,355	2017.4.13 ~2017.3.27	양생비닐 27.0㎡	15천원	(주)**토건	바닥비닐
2017 ◇▽내 화단정비사업	4,900	2017.12.7.~ 2017.11.21	경계방부목	373천원	(유)**조경	경계방부목
2017 ♠◁마을 안길보수공사	7,457	2017.11.20.~ 2017.12.8	거푸집	230천원	(합)** 건설	거푸집

### [ 처분지시 ]

- ① 과다 집행한 공사비 649천원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시 정			

## 제목 : 북일면청사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 현 황 ]

명 칭	위 치	대지면적	연면적	건물동수	사용 승인일	비고
북일면사무소	북일면 신흥리 198-1외 3필지	1,896㎡	721.56㎡	주1-본청 부1-문서고 주1-회의실외 주1-옥탑 부1-창고 부2-창고	1989.8.10	

### [ 위법·부당 내역 ]

- 북일면에서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 및 능률화를 기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과 제18조(관리 및 처분)규정에 따라 북일면에서는 위임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실태조사)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일면에서는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외에 차고 등으로 사용 중인 2동의 불법 증축건물(경량철골구조) 104.62㎡가 건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창고용도 부1(연와조, 슬래브) 동 77.9㎡를 ㉠㉡㉢㉣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와 같이 북일면에서는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 처분지시 ]

- ① 불법증축 및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주 의			

## **제목 : 공용차량 관리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장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1조(차량 집중관리 부서), 제22조(차량 관리 방법), 제23조(배차신청), 제24조(배차승인), 제27조(기록관리)에 의하면 단위 기관의 장(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공용차량(88보0000)을 사용관리하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차량유류수불현황, 차량정비현황 등을 입력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공용차량 주유 후 주유날짜를 지연입력하거나 주유량을 많이 입력하였으며, 차량정비 후 정비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표 1】 차량유류 수불 및 정비 현황**

구분	일자	부당사항
차량유류수불	2018. 1월 ~ 감사일 현재	주유날짜 지연 입력 36회
		주유량 많이 입력 30회
차량정비내역	2016년	5회 중 1회 미입력
	2017년	9회 중 3회 미입력
	2018년	5회 중 2회 미입력

## [ 처분지시 ]

- ① 공용차량 운행 · 관리시 『장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추진하고, 차량유류수불현황 및 차량정비 내역을 부당 입력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주 의			

## 제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2015. 12월 ~ 2017. 8월까지 직원 의견을 수렴한 자체 계획(수립) 없이 3건 857,000원을 [별표 2]와 같이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내역[별표 2]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계	3건	857,000	
2015.12.22	연말연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 구입	260,000	정원가산업무 추진과 무관
2016.12.27	연말연시 직원 사기진작 ㉠㉡ 구입	320,000	정원가산업무 추진과 무관
2017.12.21	연말연시 직원 사기진작 ㉠㉡ 구입	277,000	부서운영업무 추진과 무관

## ②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그리고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기관들간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문화데이, 급량비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직원 노고 격려를 사유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으며, [별표 1]과 같이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내역[별표 1]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계	11건	9,580,500	
2016.02.04	지역 특산물 홍보용 ** 구입	270,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7.01.25	지역 특산물 홍보용 ** 구입	198,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8.02.08	지역 특산물 홍보용 ** 구입	234,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6.02.04	■명절 업무추진 협조 유관기관장 격려	160,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6.09.08	☒▲명절 업무추진 협조 유관기관장 격려	264,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지출일자	집행내역	금액(원)	부당사항
2017.01.25	■명절 업무추진 협조 유관기관장 격려	110,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7.09.25	☒▲명절 업무추진 협조 유관기관장 격려	110,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8.02.08	■명절 업무추진 협조 유관기관장 격려	130,000	전체 집행대상자 미첨부
2016.1월~12월	직원 노고격려	1,847,000	예산과목 부적정
2017.1월~12월	직원 노고격려	3,940,000	예산과목 부적정
2018.1월~8월	직원 노고격려	2,317,500	예산과목 부적정

### [ 처분지시 ]

- 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2018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 ②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직원 노고 격려를 사유로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③ 또한,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계획이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주 의			

## 제목 :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1가구당 월 120리터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1인 가구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현황 및 대상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급기준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야 함에도
- 북일면에서는 2016년부터 2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 신규로 책정된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지급시 책정일자 미확인으로 과소지급하여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수급자 쓰레기봉투 과소 및 과다 지급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가구원	수급자 책정일	지급시기	지급 현황		과소.과 다
						적정 매수	지급 매수	
계						144	108	과다30 과소66
1	이○○	71.00.00	3	2016.3.3	'16.2분기	24	18	과소 6
2	김○○	69.00.00	1	2016.4.8.	'16.2분기	9	18	과다 9
3	김○○	69.00.00	1	2016.4.8.	'16.3분기	9	18	과다 9

연번	성명	생년월일	가구원	수급자 책정일	지급시기	지급현황		미지급 매수
						적정 매수	지급 매수	
4	이○○	42.00.00	3	2016.6.22	‘16.2분기	24	18	과소 6
5	김○○	69.00.00	1	2016.4.8.	‘17.1분기	9	0	과소 9
6	김○○	69.00.00	1	2016.4.8.	‘17.2분기	9	0	과소 9
7	김○○	69.00.00	1	2016.4.8.	‘17.3분기	9	0	과소 9
8	김○○	69.00.00	1	2016.4.8.	‘17.4분기	9	0	과소 9
9	김○○	69.00.00	1	2016.4.8.	‘17.1분기	9	0	과소 9
10	이○○	48.00.00	1	2017.5.30	‘17.2분기	6	9	과다 3
11	이○○	49.00.00	1	2017.11.27	‘17.4분기	6	9	과다 3
12	김○○	69.00.00	1	2016.4.8.	‘18.1분기	9	0	과소 9
13	온○○	58.00.00	2	2018.5.30	‘18.2분기	12	18	과다 6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주 의			

## **제목 :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 제3조」 및 「2015 ~ 2018 장성군 아동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들에게 토·일·공휴일·방학중 예산의 범위내에 읍면 자체 급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월 5일~10일안에 부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이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상자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결식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를 위하여 적기에 아동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 그런데 북일면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자 13명에 대하여 매월 5 ~ 10일 이내에 아동급식을 하여야 하나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아동급식 지원 사업 대상자 현황

연도별	지원인원	지원횟수	지연지원 횟수	비 고
합 계		34	15	
2015	13	2	1	
2016	11	12	10	
2017	13	12	4	
2018	11	8	0	

**[ 처분지시 ]**

- ① 관련 지침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매월초 10일 이내 부식을 지원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주 의			

## 제목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

### [ 위법·부당 내역 ]

- 북일면에서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읍면장은 건강보험 농외소득 등을 철저히 검증, 부당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별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였다.

#### (매 분기별 대상자 선정시 확인사항)

조사항목	확 인 사 항(매분기별)
기본사항	□ 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확인
영농규모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등
농외소득	□ 건강보험공단(변경사유 발생시)
타 장학금 수혜	□ 관련기관 조회(국민기초수급, 유공자, 이장, 의용소방대 등)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2015~2018년도에 북일면 ◎◆로 000-20 정○ ○ 등 16명에게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지원하면서 매 분기별 거주사항, 영농규모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여 업무를 미흡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현황

연도별	지급대상	지급액 (천원)	확 인 여 부					비고
			신청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5	7명	6,273	-	-	-	-	부	
2016	5명	4,493	부	부	부	부	여	
2017	2명	1,754	여	여	여	여	여	
2018	2명	931	여	여	여	-	-	

**[ 처분지시 ]**

- ① 농업인자녀 학자금 대상자 선정시 확인사항(주민등록 및 거주여부, 영농규모 면적, 농외소득,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 학자금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을 철저히 검토하고 반드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 대상여부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시기 바람,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주 의			

## **제목 : 농지원부 등재신청 및 경작사실 확인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북일면에서는 농업경영(영농)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또는 소유농지 중 경작구분이 “경작확인대상” 으로 등록된 자료의 경작사실 확인의뢰시 확인·실사 후 정비, 통보토록 하고 있다.
  
- 『농지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북일면에서는 관내거주자의 농지원부 등재신청이나 관외거주자의 관내소재 농지의 경작사실 확인 의뢰 문서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장하여 대상농지에 대해서 경작사실 등을 확인 후 출장결과보고 결재를 득한 후 회신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2015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현재까지 장성읍 ◆**1**로 23 김○○ 등 555건의 관내거주자의 등재신청 및 관외거주자 농지경작 사실을 확인하면서, 출장복명없이 회신하는 등 농지경작사실확인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 농지원부 등재신청(경작사실 확인 의뢰) 내역

구 분	의뢰(신청)건수	확인결과보고(출장)	등재 및 통보	비고
계	555	-	555	
농지원부 등재	195	-	195	
경작사실 확인	360	-	360	

**[ 처분지시 ]**

- ① 농지원부 등재신청 및 농지의 경작사실 확인 의뢰 문서 접수시 반드시 현장에 출장하여 대상농지에 대해 경작사실 등을 확인 후 출장 결과보고 결재를 득한 후 회신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문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주 의			주의

## 제목 : 민원서류 공문서 등록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르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 따라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202건에 대해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서가 신청되면 온나라 전자결재로 문서를 등록하여야 하나 문서 등록없이 선람한 이후 결재를 득하고 처리하여 공문서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문서 미등록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처리건수	문 서 미등록	비 고
계	335	202	
2015년	33	22	
2016년	103	78	
2017년	118	75	
2018년	81	27	

**[ 처분지시 ]**

- 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문서등록대장에 접수 후 선람을 득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기간 내에 완료 처리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북일면	2018	시정,주의	추 정	19,600	

## **제목 :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①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제40조의2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제2항, 제18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 보안미적용,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는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명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6년 5월 23일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 4건에 대해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과소 부과 및 미부과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현황**

연번	신청일자	신청인	발급사유	수수료	부과수수료	부적정 내용
1	'16.05.23	이○○	분 실	5,000원	400원	4,600원 미부과
2	'18.04.11	황○○	분 실	5,000원	-	5,000원 미부과
3	'18.04.12	박○○	분 실	5,000원	-	5,000원 미부과
4	'18.04.24	김○○	분 실	5,000원	-	5,000원 미부과

## ②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적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기관의 장은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의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에 따른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정일자 부여 사실을 통한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신청인(위임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증명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전입세대를 열람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표 2】 과 같이 2015년 10월 2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0건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받지 않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50	5	33	12	

**[ 처분지시 ]**

- 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과소 및 미부과한 수수료 19,600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 ②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시 반드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확인 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③ 또한, 앞으로 주민등록 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고,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